용인시 수지구 풍덕천 1동 공고 제2024-51호

공시송달 공고

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장애 재판정을 이행하지 않아 동법 제32조의3 제3호에 따라 장애인 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자에 대해 같은 법 제51조의2, 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 취소 행정처분 전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며,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에 대해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4. 8. 7.

풍덕천1동장

- 다 음 -

1. **예정된 처분의 제목** : 장애인 등록 취소
2. **당사자** : 장애인등록 취소 대상(붙임 참조)
3. **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** : 장애인 의무 재판정 미이행
4. **처분하고자 하는 내용** : 장애인등록 취소[언어/심한 장애(2021. 7. 14. 정도결정)]
5. **법적근거** :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(장애인등록), 동법 제32조의3(장애인등록취소 등) 제1항 제3호, 동법 제83조의2(청문) 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(장애 상태 확인)
6. **공고기간** : 2024. 8. 7.(수)~2024. 8. 21.(수)(14일간)
7. **공고장소** : 홈페이지 및 게시판
8. **의견제출(청문 미참석 시)**
   - ○ **일 시** : **2024. 9. 19.(목)까지 의견제출**
   - ○ **장 소** : 풍덕천1동 행정복지센터
   - ○ **부서명** : 맞춤형복지팀(☎031-324-8604)
   - ○ **주 소** :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342번길 3(풍덕천동)
9. **청문실시**
   - ○ **일 시** : **2024. 9. 20.(금) 오후 2시**
   - ○ **장 소** : **수지구청 3층 영상정보실**
   - ○ **주재자** : **자치행정과 기획감사팀장 박은주**

10. 유의사항

○ 해당 사항에 대하여 구술·정보통신망 또는 「행정절차법」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,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,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.

○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.

○ 이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인 수지구청장이나 재결청인 경기도지사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수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○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끝.

【붙임 1】 공시송달 대상자

대상자	주소	사유
김*환	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67, *동 *호	2024. 7. 29. 폐문부재

【붙임 2】 의견제출서

■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[별지 제11호서식] <개정 2014.7.28>

의 견 제 출 서

※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의견제출인	성명		
	주소		전화번호
의견제출 내용	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**장애인 등록 취소**		
	당사자	성명(명칭)	
		주소 (전화번호:)	
	의 견		
	기 타		

「행정절차법」 제27조제1항(제31조제3항)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의견제출인 (서명 또는 인)

귀하

유 의 사 항
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2.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 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